

- 「의료법」제33조에 근거 조문을 추가: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내 의료업 수행 원칙의 예외 사항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, 그 밖에 의료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시범사업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함
- 그밖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기준(동일 환자 월 2회 초과 산정금지)을 조건에서 제외하였으며, 약국 비대면 진료 지침에서는 시범약국에서의 제한(약국 내 조제 건수 중 월 비대면 조제 건수 비율 30% 초과 금지) 또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는 제외

3.2. 국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

□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체계

-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체계를 요약⁶⁾하면 <표 3-1>과 같음

<표 3-1>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체계

구 분		내 용		
참 여 범 위	의원급	재진 원칙	대면 진료 경험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경험(질환 관계없이 6개월 이내)이 있는 재진 환자
		초진 허용	섬·벽지 환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섬·벽지지역(「보험료 경감고시」) 거주자 • 응급의료 취약지(98개 시·군·구)
			거동 불편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만 65세 이상 노인(장기요양 등급자에 한함) • 장애인(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 장애인)

6) 보건복지부의 「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」(2023년 6월)에서 2023년 9월과 12월의 개정사항을 반영

구 분		내 용	
		감염병 확진 환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감염병예방법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(권고 포함)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
		휴일·야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진료 이력 없이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(처방 의약품은 약국 방문 수령 원칙)
병원급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하여 진료한 경험이 있는 환자 - 희귀질환자(1년 이내) - 수술·치료 후 지속적 관리(30일 이내)가 필요한 환자(신체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, 검사 결과의 설명에 한함)
시범의료 기관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건의료원, 보건소, 보건지소
실 행 방 식	진료방식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원칙: 화상 진료 예외: 화상통신 사용이 곤란한 환자에 대해 음성 전화(유·무선 전화가 아닌 문자메시지, 메신저만으로는 진료 불가) 가능
	처방전 전달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·이메일 등 송부(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)
	의약품 수령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본인 수령, 대리 수령, 재택 수령(섬·벽지 환자, 거동 불편자, 감염병 확진 환자, 희귀질환자에 한함) 등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는 방법
수 가	의료기관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진찰료+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(진찰료의 30%)
	약국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약제비+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(약국관리료, 조제기본료, 복약지도료의 30%)
실시기관 준수사항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본인 확인 의무) 본인 여부 및 허용 대상 여부 사전 확인 후 진료 - 본인 확인 결과 및 진료 실시 내용 진료기록부 기재 의무 (부적절 비대면 진료 금지) 의료기관 내 진료실 등 적합한 진료환경에서 실시 -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 부적합 환자에 대해서는 대면 진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음 (전담기관 운영 금지) 비대면 진료만 실시하는 의료기관, 비대면 조제만 실시하는 약국 금지(월 진료·조제 건수의 30% 이내?) (처방 금지) 마약·향정신성 의약품, 오·남용 우려 의약품(발기부전 치료제 등), 사후피임약

7)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는 예외